

먼저 시작하세요!

남보다 앞서서 시작하는 [위험성평가], 믿음직한 지원과 많은 혜택이 있어서 든든합니다.

사업주를 위한 각종 지원

- 사업장 스스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위험성평가 매뉴얼 제공
-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에 대한 무상 실무교육 및 법정교육으로 인정
- 참여 사업장에 대해 무상 컨설팅 실시
- 요청 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 융자·보조
- 지속적 실행을 위한 기술·재정·교육 서비스 지원

[위험성 평가] 기대 효과

- 사업장에 꼭 맞는 안전보건체제 구축 가능
- 단계적 투자에 의한 사업장 경쟁력 향상
- 노·사 재해예방활동 참여로 사내 소통 원활화
- 산재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심리적 부담 완화
- 재해에 따른 직·간접적인 손실비용 절감

우리나라도 안전 선진국으로!

선진 외국보다 산업재해율이 3~7배 높은 대한민국. 노·사가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을 스스로 챙기는 안전문화의 선진화를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.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[위험성평가]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선진국의 위험성 평가제도 현황

- 유럽연합(EU) : 1989년 산업안전보건지침(Directive 89/391)
- 영국 : 1992년 보건안전관리규정(MHSWR)과 위험성평가지침(GRAR)
- 독일 : 1996년 「사업장근로자 안전보건법」
- 미국 : 1998년 자율보호프로그램(VPP)
- 일본 : 1999년 노동안전위생경영시스템(OSHMS)
- 이밖에 싱가포르(2006년), 호주(1989년) 등에서 도입·운영 중

위험성평가 안내기관(문의처)

고용노동부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구 삼일대로 363(장교동)장교빌딩 1~6층, 9층
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구로구 구로디지털32길 42(구로3동 222-30)
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시 남동구 문화서로 62번길(구월3동 1113)
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인천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(계산4동 1077-1)
 경기고용노동지청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(천천동 575-5)
 부천고용노동지청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(중4동 1032-2)
 안산고용노동지청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26(고잔동 526-1)
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의정부시 총의로 143
 강원고용노동지청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(후평동) 춘천지방합동청사 2층
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(둔산동 1303)
 청주고용노동지청 청주시 흥덕구 제1순환로 1047(보평동 1427 합동청사 4층)
 천안고용노동지청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
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13(연산2동 1470-1)
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(덕포2동 761-2)
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9번길 4(용호동 7-5)
 양산고용노동지청 양산시 동면 남양산길 58(석산리 1440-2)
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(범어동 743)
 대구북부고용노동지청 대구시 북구 구암로 51
 포항고용노동지청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(대창동 940)
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시 북구 첨단과기로 200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~6층
 전주고용노동지청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(인후동1가 807-8)
 군산고용노동지청 군산시 조촌5길 44(조촌동 852-1)

안전보건공단

서울지역본부 동작구 노량진로 179(대방동 49-6) 유한양행빌딩 14~15층
 서울북부지지원 중구 칠패길 5(봉래동 1가 10번지) 우리빌딩 7~8층
 경인지역본부 인천시 서구 한빛로 15(가정동 491)
 부천지지원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(상3동 538-83) 대신프라자 3층
 경기남부지지원 수원시 영통구 권광로 511(이외동 906-5)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3층
 경기서부지지원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번지 센트럴시티웨딩홀 2층(고잔동 729-2)
 경기북부지지원 의정부시 추동로 140(신곡동 801-1)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
 강원지지원 춘천시 경춘로 2370(오의동) 교원공제회관 2층
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(문지동)
 충북지지원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(가경동) KT빌딩 3층
 충남지지원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(불당동 492-3)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
 부산지역본부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(부곡동 64-31)
 경남동부지지원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(석산리 1440-1) 양산노동종합청사 4층
 경남지지원 창원시 중앙로 159(용호동 7-3)
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(50-3 호수빌딩 19, 20층)
 경북동부지지원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(대도동 124-4)
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82
 전북지지원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(인후동1가 807-8) 노동부종합청사 4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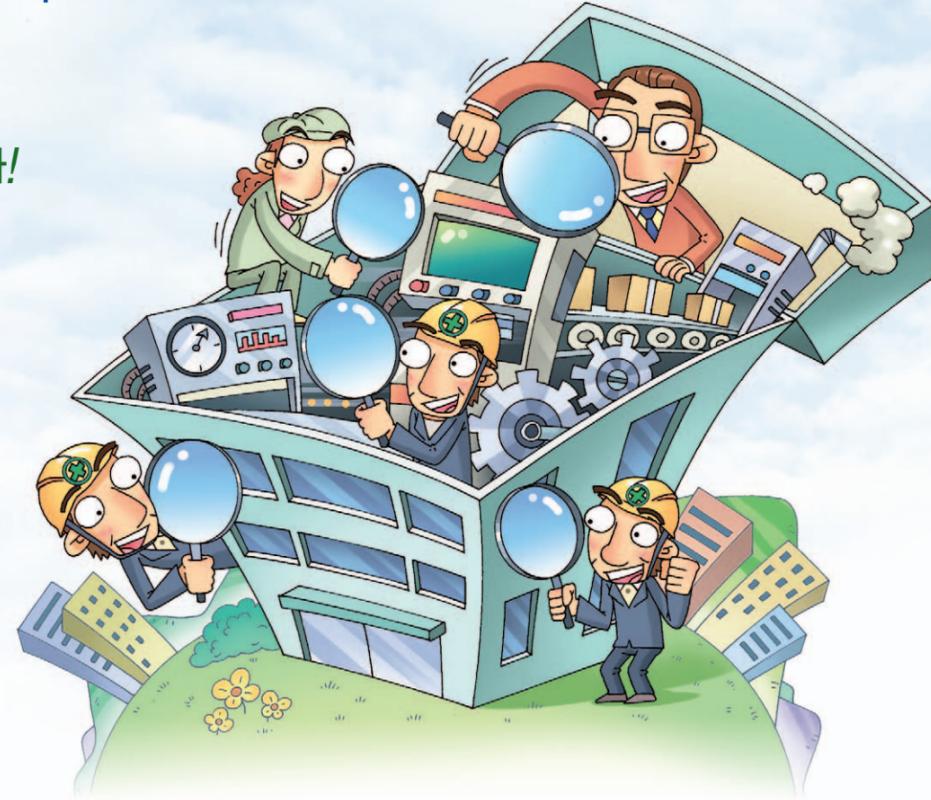
Tel. 02)2250-5770
 Tel. 02)3281-5021
 Tel. 032)460-4419
 Tel. 032)540-7983
 Tel. 031)259-0203
 Tel. 032)714-8781
 Tel. 031)412-1974
 Tel. 031)850-7638
 Tel. 033)269-3551
 Tel. 042)480-6309
 Tel. 043)299-1311
 Tel. 041)560-2865
 Tel. 051)850-6474
 Tel. 051)309-1556
 Tel. 055)239-6580
 Tel. 055)387-0805
 Tel. 053)667-6364
 Tel. 053)605-9154
 Tel. 054)271-6830
 Tel. 062)975-6200
 Tel. 063)240-3397
 Tel. 063)452-0530

Tel. 02)828-1600
 Tel. 02)3783-8300
 Tel. 032)570-7200
 Tel. 032)680-6500
 Tel. 031)259-7149
 Tel. 031)481-7599
 Tel. 031)841-4900
 Tel. 033)815-1012
 Tel. 042)620-5600
 Tel. 043)230-7111
 Tel. 041)570-3400
 Tel. 051)520-0601
 Tel. 055)371-7500
 Tel. 055)269-0510
 Tel. 053)609-0500
 Tel. 054)271-2014
 Tel. 062)949-8700
 Tel. 063)240-8500

2013년 [위험성평가] 제도가 확대됩니다

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가치입니다!

[위험성평가], 먼저 시작할수록 돌아오는 이익과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.



산업안전보건이 정부 주도에 의한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사업주의 자율 규제방식으로 전환됩니다

-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통해 근로자 사기 진작, 생산성 향상,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커집니다.
- 산재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
- 재해 손실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.
- 정부 규제가 없어 행정업무 부담이 경감됩니다.

내 재산 남에게 맡길 수 없듯 내 사업장 안전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.



[위험성평가]란?

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·평가하여 개선·재검토하는 순환과정을 반복적·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

사업 추진·시행 일정

- ▶ 2010~2012년 3년 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 전면 시행 예정
- ▶ 2012년은 해당 지역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
 - 고용노동부(22개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)
 - 안전보건공단(18개 지역본부 및 지도원)

위험성평가 운영체제

최종 (자율관리)	사업장 자율관리 [고용부, 공단]	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단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 [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]
4단계 (교육, 컨설팅)	자율안전보건 관리 능력 지원 [공단, 민간]	자율안전보건 역량 구축단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[조직·체계, 규정 등의 체계화, 자율관리 역량 배양]
3단계 (컨설팅, 인정)	위험성평가 실행 및 개선 [고용부, 공단, 민간]	위험성평가 실행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컨설팅 지원 등 [위험성평가 결과 수준등급 평가 후 인정]
2단계 (교육)	위험성평가관리 능력의 확보 [공단, 민간]	사업장 추진 역량 배양단계 사업장 평가자 일반, 전문교육 지원 [소규모 사업장은 공단에서 지원]
1단계 (신청)	최고 경영진의 참여의지 확보 [고용부, 공단]	사업주 인식, 실행의지 확인단계 참여사업주 워크숍 개최 및 서약 [사업주에게 실행의무 부여]

참여사업장 이익은?

경제적 이익

- 재해예방으로 관련 손실비용 최소화
- 재해위험에 대한 선별 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예산 감소
- 안전보건 행정업무 통합·간소화



정부의 혜택

- 인정 사업장 감독 면제
- 보험요율제를 통해 기존 산재보험료 절감
- 면책과 과태료 완화 등으로 벌칙성 소모 경비 경감

재해예방·감소에 따른 부대효과

- 노동인력 보존과 생산성 향상
- 사업장의 능동적 분위기 조성 및 유대감 강화
- 기업 인지도 상승으로 부가가치 창출

사업 절차·지원사항

